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14 호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시설</td><td colspan="5">시설명 관내 가금농장,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소재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유자
(관리자)</td><td colspan="3">성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소</td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명령의 내용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구분 출입통제</td><td colspan="2">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이행장소 '23. 4. 이후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
설정된 방역지역</td><td>이행기간
'23. 4. 6. ~
방역지역 해제 시</td><td>대상 두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명령대상</td><td rowspan="2">가축</td><td>축종</td><td>품종</td><td>성별</td><td>연령</td><td>귀표(개체)
번호</td><td>특징</td><td>비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람</td><td colspan="6">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
축산 관련 종사자(백신접종팀, 상하차반, 가축진료인력,
컨설팅 · 인공수정 인력, 동물약품업체 관계자,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,
농장 내 시설공사를 위한 외부인력)</td></tr>
<tr><td>차량</td><td colspan="6">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>준수사항</td><td colspan="6">방역지역 내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(사육시설 50㎡ 초과 농장) 방문 시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.
○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
- 지대(포대)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
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, 작업 전·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·소독 실시
- 다만,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·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,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</td></tr>
</table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4월 6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 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